

보도일시

2018. 2. 26. (월) 12: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생산 부서: 법인납세국 법인세과

배포 일자: 2018년 2월 26일

담당 과장 | 이현규 과장 | 044) 204-3301

담당자 | 조풍연 사무관 | 044) 204-3312

## 3월 법인세 신고,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최대한 제공

- 「자기검증 서비스」 등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-

- 2017년 12월 결산법인은 4.2까지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3.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.
-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.2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.
- 국세청은 홈택스의 「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」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, 신고편의를 확대하여 성실 납세를 적극 뒷받침 할 계획임.
- 법인세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공제·감면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「자기검증 서비스」 등 새로운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
-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「절세 Tip」과 업종·유형별 특성에 맞는 「맞춤형 안내자료」를 확대 제공할 계획임.  
\* (안내자료) '17년 25개 → '18년 30개, (절세 Tip) '17년 8개 → '18년 15개
- 또한, 지방청·세무서에 「공제·감면 전문상담팀」, 「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」를 운영하여 중소법인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음.
- 아울러, 자연재해,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.

■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,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. 2.(월)까지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함.

-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 법인의 소득을 통산하여 4. 30.(월)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함.
-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5만 개로 지난해 보다 4만 1천 개 증가<sup>\*</sup>하였음.

\* 신고대상 법인: ('17년) 710,315개 → ('18년) 751,070개

■ 신고대상 법인은 3. 1.부터 국세청 홈택스(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)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

-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<sup>\*</sup>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음.  
\* 법인 기본사항, 재무제표,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
- 또한,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.

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(중소기업 2개월)까지 분납할 수 있음.

- 자연재해,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(최대 9개월) 등 세정지원을 하겠으며,
-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.

■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「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\*」를 열람하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음.

\* (접근 경로) 홈택스 > 조회/발급 > 세금신고납부 > 「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」

- 「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\*」는 3. 1.부터 모든 신고대상 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할 예정임.

\* 연도별 신고상황, 신고 시 참고할 자료, 법인별 신고 시 유의사항, 절세Tip 등

- 또한,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신고절차, 신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.

\* (접근 경로) 국세청 누리집([www.nts.go.kr](http://www.nts.go.kr)) > 성실신고지원 > 법인세

■ 올해부터 '자기검증 서비스' 등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.

- 공제·감면 자기검증 서비스 제공

- 신고 후 검증하던 것을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공제·감면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 제공

- 법인세 신고도움 365일 조회 서비스 제공

-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를 신고기간(3월) 동안 제공하였으나, 자가진단에 활용하도록 365일 조회 서비스 제공

-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일괄조회 서비스

-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번호로 개별조회하였으나, 수임납세자의 자료를 한번에 조회하는 수임납세자 일괄조회 서비스 제공

-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개선

- 숫자로 제공하였던 연도별 수입금액, 소득률 변동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(그래프) 된 화면 제공

### 3

##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확대

■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예정임.

- 이를 위해 납세자의 업종·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전안내 자료\*를 확대 제공하고,

\* ('17년) 25개 항목, 15만 개 법인 → ('18년) 30개 항목, 18만 개 법인

----- <주요 사전안내 항목(예시)> -----

-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
-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
-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처리

-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문제·감면 등을 안내하는 '맞춤형 절세 Tip'\*도 확대 제공함.

\* ('17년) 8개 항목, 47만 개 법인 → ('18년) 15개 항목, 56만 개 법인

----- <주요 맞춤형 절세 Tip 항목(예시)> -----

-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
-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
-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, 청년창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- 또한, 주요 탈루 유형,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\*(12종)를 제공함.

\*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,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등

\*\* (접근 경로) 국세청 누리집([www.nts.go.kr](http://www.nts.go.kr))>성실신고지원>법인세>04 참고자료실

■ 지방청에 「공제·감면 전문상담팀」을 운영하여 중소법인들이 놓치기 쉬운 각종 문제·감면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하고,

- 각 세무서에는 「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」를 설치하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실시할 계획임.

-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\*은 4. 2.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,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,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.

\* 사회복지 · 의료 · 학교법인, 학술연구 · 장학 · 예술문화단체 등

- 「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」, 「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」는 흠텍스(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)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.

\* (접근 경로) 국세청 흠텍스>신고납부>일반신고>「공익법인보고서 제출」

<제출 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할 서류>

| 제출 의무 공익법인   | 제출할 서류  |
|--|---|
| ①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 |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(8종)<br>[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~26호 및 부표] |
| ② '17년 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|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(7종)<br>[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]      |
| 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<br>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등)              |
| ④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주무부장관이 미사용 사유를 인정한 관련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(종교법인 제외)은 4. 30.까지 결산서류를 흠텍스에 공시하여야 함.

-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음.

- 공익법인이 공시사항 등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신고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'미리채움(Pre-filled) 서비스'를 제공함.

- 지방청·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 출연재산 보고와 공시 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.

## 5

## 편리한 세금 납부 지원

-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이나 가까운 은행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.
  - 국민, 농협 등 18개 은행 CD/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 (체크)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,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가능함.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| 명 단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CD/ATM기 이용가능 은행<br>(18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광주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농협중앙회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산림조합중앙회, 새마을금고중앙회, 수협은행, 수협중앙회, 신용협동조합중앙회, 신한은행, SC제일은행, 우정사업본부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KEB하나은행</li></ul> |
|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업체(7개)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페이코, 6개 카드사(국민·농협·롯데·삼성·신한·현대)</li></ul>  |

\* (접근 경로) 국세청 홈택스(앱) → 신고/납부 → 납부방법 선택(간편결제)

## 6

## 성실신고는 최선의 절세입니다.

-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 노력을 다하는 한편,
  - 사전 안내자료의 신고반영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임.
- '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'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.

붙임: 법인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

# 법인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

## I.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주요 내용

- ①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..... 8
- ② '18년 법인세 신고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 ..... 9
- ③ 업종 · 유형별 사전안내 [예시] ..... 12
- ④ 절세 Tip [예시] ..... 12
- ⑤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..... 13
- ⑥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식 ..... 14
- ⑦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 ..... 15

## II. 중소기업 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신고 참고자료 .. 17

## 1

##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

## 1. 홈택스 로그인 후 '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' 클릭



원활한 신고를 위하여 **Windows Internet Explorer**를 이용하시는 사용자는  
반드시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.  
브라우저 보안설정 바로가기

■ 1일간 월자 암출 **닫기**

HOME My NTS 즐겨 찾기 국세 기업 101-81-12345 KUK 회원정보조회

로그아웃 공인인증센터 모의계산 공인법인공시 법령정보

**HomeTax. 국세청홈택스**

통합검색

조회/발급 민원증명 신청/제출 신고/납부 상담/제보

법인세 신고  
도움서비스

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!  
투명한 정부! 유능한 정부! 서비스 정부!

제공수단  
국세청을 아는 정부 3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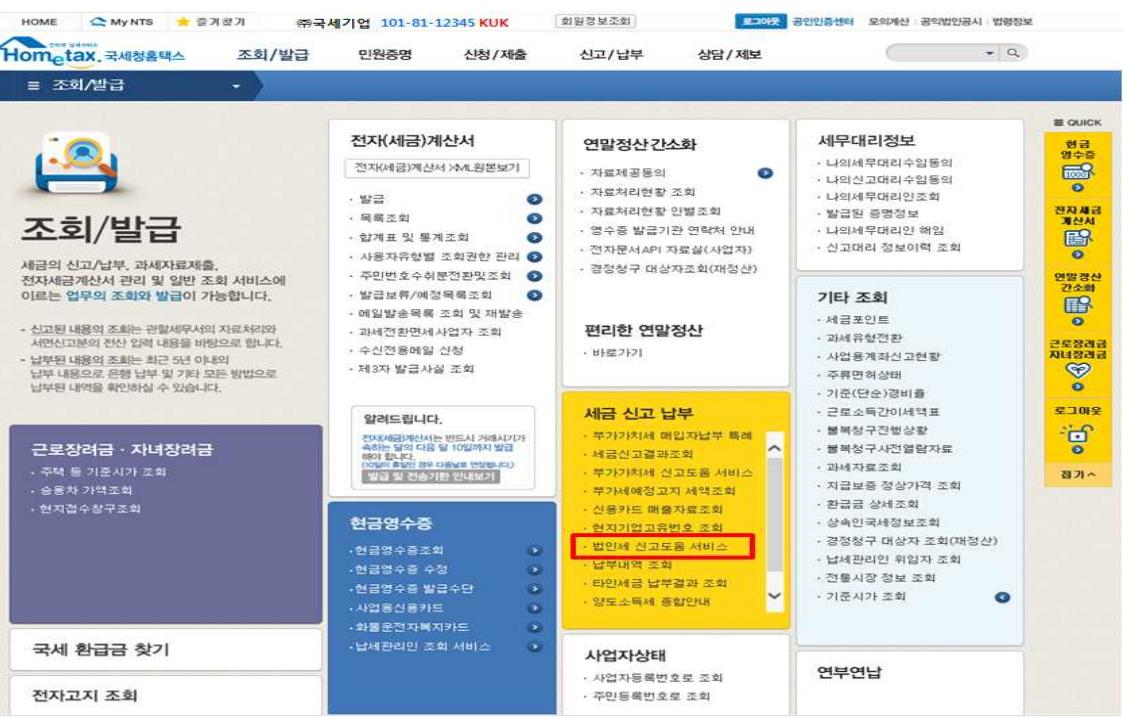
국세청 126  
상영시간 09:00 ~ 18:00

공지사항 [더보기]  
- 연말정산 외내부 외장한 이예일로 접수액...  
- 2016년 퇴직 '편리한 연말정산' 이용률...  
- 모바일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 개통 안내

자주묻는 상담사례 [더보기]  
-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...  
- 대출금은 언제부터 상환해야 하나요?  
- 사업을 하려고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...

제도소개

## 2. 홈택스 로그인 후 '조회/발급' → '세금 신고 납부' → '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' 클릭



HOME My NTS 즐겨 찾기 국세 기업 101-81-12345 KUK 회원정보조회

로그아웃 공인인증센터 모의계산 공인법인공시 법령정보

조회/발급 민원증명 신청/제출 신고/납부 상담/제보

**조회/발급**

세금의 신고/납부, 과세자료제출,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및 일반 조회 서비스에 이르는 업무의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신고된 내용의 조회는 관세세무서의 자료처리와 세면신고분의 전산 입력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.  
납부된 내용의 조회는 최근 5년 이내의 납부내용으로 드물게 납부 및 기타 모든 방법으로 납부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**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**

-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
- 승용차 가액 조회
- 현지납수항구 조회

**국세 환급금 찾기**

**전자고지 조회**

**전자(세금)계산서**

전자(세금)계산서 > XML문서보기

- 발급
- 목록조회
- 합계표 및 통계조회
- 사용자유형별 조회권한 관리
- 주민번호수취분전환및조회
- 발급보류/예정목록조회
- 매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
- 파쇄전 한면서 사업자 조회
- 수신전송여부일 신청
- 제3자 발급사실 조회

알려드립니다.

전자(세금)계산서는 반드시 거래시기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.  
예외로 12월에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입니다.

**현금영수증**

- 현금영수증 조회
- 현금영수증 수정
- 현금영수증 발급수단
- 사업용신용카드
- 화물운송자체증
- 납세판권인 조회 서비스

**세금 신고 납부**

- 부기기자재 매입자납부 특례
- 세금신고 과정조회
- 부기기자재 신고도움 서비스
- 부기기재고지 세액조회
- 신용카드 매입자료조회
- 현지기업고객번호 조회
-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
- 납부내역 조회
- 타인세금 납부결과 조회
- 양도소득세 증정인내

**사업자상태**

-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
- 주민등록번호로 조회

**연부연납**

■ QUICK

- 현금 영수증
- 전자세금 계산서
- 연말정산 간소화
- 근로장려금 지녀장려금
- 로그아웃
- 접기

## 2 '18년 법인세 신고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

### ○ 공제·감면 자기검증 서비스

⇒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오류메세지를 통해 공제·감면의 적정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

| 신고서 오류내역 조회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• 메시지유형 설명<br>- 오류 :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함<br>- 경고/안내 : 신고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어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신고서 제출은 가능함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 • 신고내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 과세년월   | 2017년 11월               | 신고구분             | 정기(확정)  |
| 신고서종류  | 법인세 일반결과확정(내국세,농특세) 신고서 | 신고유형             | 정기신고  |
| • 오류내역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 서식명  | 메시지유형                   | 항목명              | 내용검증 오류내역   |
|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| 오류                      | 법인종류코드           | 2013년 귀속부터 중소기업일경우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서식의 중소기업적정여부를 유효로 표시하는 경우         |
|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| 오류                      |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| [자기검증서비스] 코드(17)최저한세적용 대상공제감면세액(6000000)이 0를 초과하는 경우            |
|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갑)  | 오류                      | 공제감면코드           | [자기검증서비스] 투자세액공제 [코드(131)] 적용시 투자자산명세서(M 10010) 제출이 필요로 표시하는 경우 |
|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갑)  | 오류                      | 공제감면코드           | [자기검증서비스] 투자세액공제 [코드(136)] 적용시 투자자산명세서(M 10010) 제출이 필요로 표시하는 경우 |

### ○ 신고도움 365일 조회 서비스

⇒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를 365일 연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 
(사업연도 입력란에 2016, 2017을 입력 후 과년도 자료도 조회 가능)

| 조회/발급  | 세금신고납부        |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| 세금계산서 간별발급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2017년 법인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리는 「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」 -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자등록번호  | 130 - 81 -    | 사업연도         | 2016                    |
| 2017년 법인세 신고 안내자료  |               | 조회하기         | 출력                      |
| ◆ 유의사항<br>1. 본 자료는 법인세 신고안내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법인세 신고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<br>2. 본 자료는 정기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정신고, 고지 등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<br>※ 법인세 신고 및 신고안내 자료에 대한 문의처 : 청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법인팀 (☏)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● 1. 기본사항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법인명  | 주식회사          | 대표자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법인구분   | 외국인투자법인       | 사업연도         | 2016.01.01 ~ 2016.12.31 |
| 법인종류   | 영리 기타 일반 중견법인 | 주업종코드        | 343000                  |
| 업태   | 제조업           | 종목           |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          |
| 세금포인트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* 전년도에 신고한 기본사항입니다. 주업종코드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○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일괄조회 서비스

⇒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 제공 목록과 내용을 입력없이 원클릭으로 일괄조회하는 화면 제공 (수임사업자 리스트 조회 후 업체 선택만으로 수임업체 자료 조회 가능)

- 2018년 법인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리는 「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」 -

사업자등록번호  -  -  사업연도  2017 수임사업자등록상황 조회하기 출력

2018년 법인세 신고 안내자료

◆ 유의사항

1. 본 자료는 법인세 신고안내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법인세 신고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 
2. 본 자료는 정기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정신고, 고지 등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
※ 법인세 신고 및 신고안내 자료에 대한 문의처 :

1. 기본사항

|      |       |
|------|-------|
| 법인명  | 대표자   |
| 법인구분 | 사업연도  |
| 법인종류 | 주업종코드 |
| 업태   | 종목    |

세금포인트

\* 전년도에 신고한 기본사항입니다. 주업종코드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납세자등록상황 – Internet Explorer

https://ver-teht.hometax.go.kr/websquare/popup.html?w2xPath=/ui/m/a/b/a/b/UTERNAAA88.xml&popupID=UTERNAA131&w2xHome=/ui/ National Tax Service [KR]

수임사업자등록상황

\*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 \* 신고도움서비스자료 여부  -전체-  \* 사업연도  2017 조회하기

※ \* 신고도움서비스자료 : 'Y'일때 수임 등록된 법인사업자중 신고도움서비스자료가 등록된 사업자목록 조회  
'N'일때 수임 등록된 법인사업자목록 전체 조회

수임사업자 등록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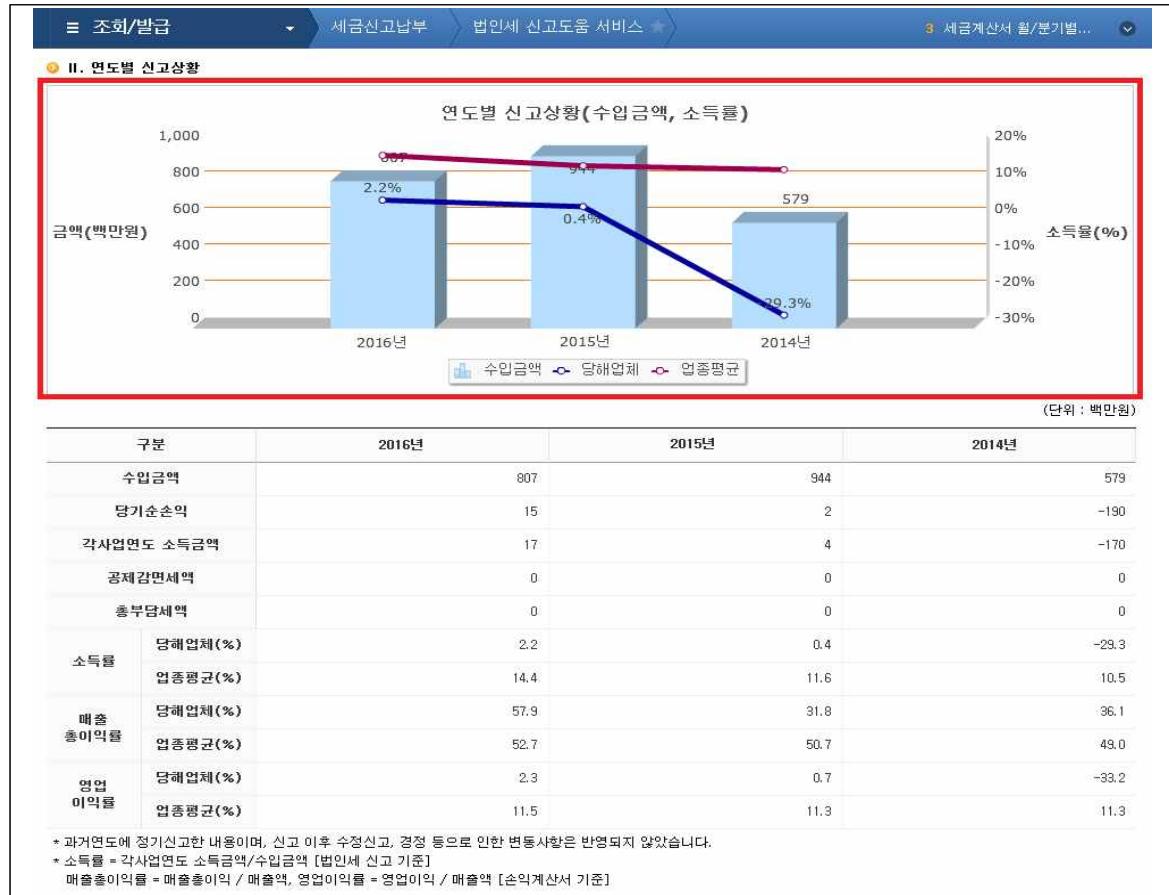
| 사업자등록번호 | 상호 | 수임일자       | 동의일자       | 신고도움서비스 자료여부 |
|--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220-81- |    | 1999-07-01 | 2014-05-20 | Y            |
| 114-86- |    | 2010-01-01 | 2014-04-07 | Y            |
| 135-86- |    | 2014-10-07 | 2014-11-13 | Y            |
| 220-81- |    | 2000-04-17 | 2014-05-19 | Y            |
| 220-86- |    | 2002-02-01 | 2014-04-24 | N            |
| 106-86- |    | 2014-09-01 | 2014-09-24 | Y            |
| 104-81- |    | 2005-12-01 | 2014-04-04 | Y            |
| 264-81- |    | 2012-10-01 | 2014-06-24 | Y            |
| 211-88- |    | 2010-01-01 | 2014-12-23 | Y            |
| 101-81- |    | 2006-01-01 | 2014-04-03 | Y            |

1 2 3 4 5 6 총 56건(1/6)

닫기

## ○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개선 (그래프)

⇒ 숫자로 제공되던 연도별 수입금액, 소득률 변동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(그래프)된 화면으로 구현  
(연도별 수입금액 증감상황과 업종평균 소득률을 비교분석 가능)



### \* '17년 수정전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(참고)



### 3 업종 · 유형별 사전안내 [예시]

-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업종·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전안내 자료 제공

| V. 법인별 신고시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|--|
| 안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용   |
| 특정한 항목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| <p>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시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추징되는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. 2017년 귀 법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 이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려드리니 업무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변잡화 구입 추정액: 4백만 원</li> <li>가정용품 구입 추정액: 1백만 원</li> <li>업무무관업소 이용 추정액: 42백만 원</li> <li>개인적 치료 추정 비용: 1백만 원</li> <li>해외 사용액: 50백만 원</li> </ol> |
| 업무용승용차 취득 · 보유법인이 신고시 유의할 사항           | <p>'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이 의무화(정액법,5년) 되었고, '16년부터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관련비용의 일정금액(1천만 원)을 손금으로 인정하고, 운행기록부 작성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인정되나 사적관련비용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오니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업무용승용차 내역: 10대</li> <li>관련 총비용: 151백만 원</li> </ol>  |
| 지출증명서류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| <p>'16사업연도 순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증빙수취 대상 계정과목 금액과 귀 법인이 제출한 정규증빙 수취금액의 차이 발생 금액을 알려드리니 정규증빙 수취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취대상금액(①): 170,865백만 원</li> <li>증빙수취금액(②): 78,292백만 원</li> <li>차이 금액(①-②): 92,573백만 원</li> <li>증빙수취비율(②/①): 45.8%</li> </ol>   |

### 4 절세 Tip [예시]

-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을 안내

| VII. 절세 Tip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안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용  |
|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| 귀 법인은 '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안내하오니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(조세특례제한법 제7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   |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기업이 고용한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청년 정규직 인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오니,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(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)   |
|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내            | '17.1.1.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증가한 고용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이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(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) |

| 법인세 신고안내 | 대분류        | 세부항목  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|
|          | 신고시 유의사항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18년 법인세 신고 시 달라지는 사항</li> <li>○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</li> <li>○ 주요 해석사례</li> <li>○ 법인세 신고 보도자료</li> </ul>   |
|          | 법인세 신고절차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세무조정이란?</li> <li>○ 법인세 신고기한</li> <li>○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</li> <li>○ 법인세 전자신고 <small>☞ 흠택스로 연결</small>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영리법인 신고안내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</li> <li>○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</li> <li>○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</li> <li>○ 토지 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</li> </ul>   |
|          |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</li> <li>○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</li> <li>○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</li> <li>○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법인세 공제·감면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인세 공제·감면 사항</li> <li>○ 세법상 중소기업이란?</li> <li>○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 점검하기</li> </ul>  |
|          | 동업기업 과세특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업기업이란?</li> <li>○ 동업기업 과세특례 의의</li> <li>○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</li> <li>○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</li> <li>○ 동업자의 납세의무</li> <li>○ 동업기업 과세특례 관련 서식</li> </ul> |
|          | 연결납세제도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결납세제도란?</li> <li>○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</li> <li>○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</li> <li>○ 연결납세방식 관련 서식</li> </ul>   |

\* (접근 경로) 국세청 누리집([www.nts.go.kr](http://www.nts.go.kr)) > 성실신고지원 > 법인세

## ■ 자기검증 검토서식 확대 제공

-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확대 제공
  - \* ('17년) 10개 항목 → ('18년) 12개 항목

### < 자기검증 검토서식 >

-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
-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
-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
-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
- 중소기업 요건 자체 검토서식
-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
- 연구·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
- 연구·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
-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
-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
-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('18년 추가)
-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('18년 추가)

\* (접근 경로) 국세청 누리집([www.nts.go.kr](http://www.nts.go.kr)) > 성실신고지원 > 법인세 > 04 참고자료실

7

##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

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운영

-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'공익법인 전문상담팀'을 설치하였음.
  - 가까운 지방국세청, 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에서 보고·공시 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과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음.

\*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연락처

(세무서 전문상담팀 연락처: 국세청 홈택스 – 공익법인 공시 – 공지사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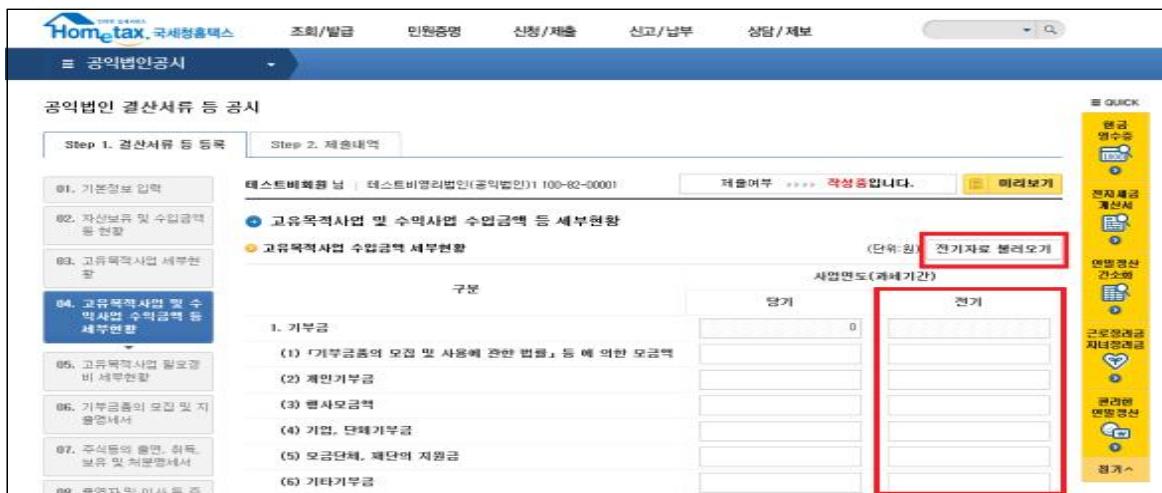
| 지역별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| ☎ 02) 2114-2943~4     |
|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| ☎ 031) 888-4854~5     |
|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| ☎ 042) 615-2468       |
| 광주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| ☎ 062) 236-7468       |
| 대구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| ☎ 053) 661-7467, 7483 |
| 부산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| ☎ 051) 750-7445       |

- 아울러,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3월초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세법상 의무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.  
\* 공익법인 세무정보 안내홍보물 제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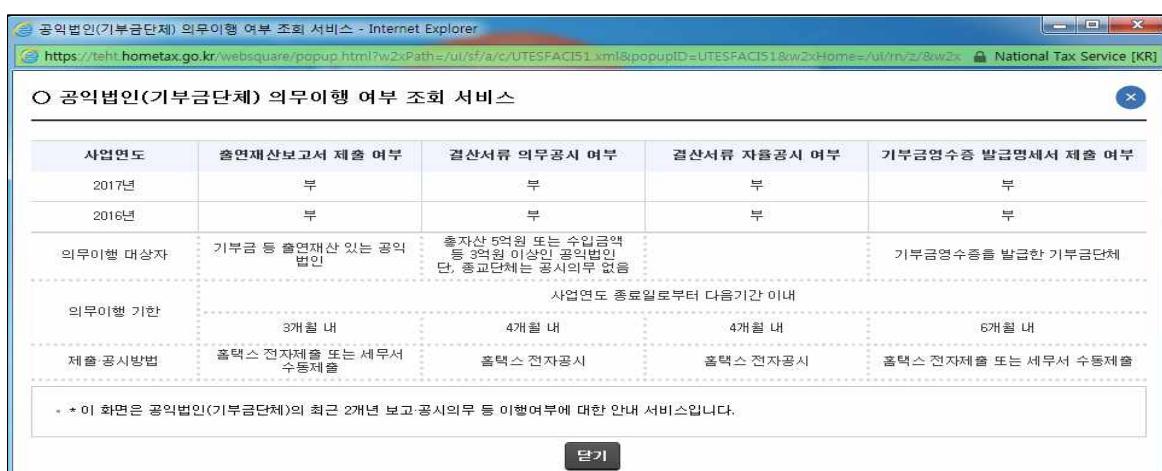
## ■ 미리채움(Pre-filled) 서비스

-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'미리채움(Pre-filled) 서비스'를 제공함.
  - \* 흠탑스 입력단계에서 직전년도 신고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축소하고, 작성시간을 단축시킴.
  - \* [신고/납부]-[공익법인 보고서 제출], [공익법인 공시]-[결산서류 등 공시] 화면에서 '전기자료 불러오기' 선택



## ■ 의무이행 여부 안내 서비스

-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 화면에 접속하면 출연재산 보고서 ·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제출 여부 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.
  - \* [공익법인 공시] - [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] - (자동팝업)
  - \* 최근 2개년 보고·공시 의무 등 이행여부에 대한 안내 제공



## 1

##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

정부는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.

- 중소기업 기준을 모든 업종(소비성서비스업\*을 제외)으로 확대하여, 2017. 1. 1. 이후 고용·투자하거나,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.

\* 유흥주점·단란주점업 및 호텔·여관업(관광유흥, 관광숙박 제외)

- 중소·중견기업에 한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, 청년고용 증대, 정규직 전환 등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와 관련한 공제세액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.

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니 법인세 신고 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람.

- ◆ (중소기업만 적용)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,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,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,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
- ◆ (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) R&D세액공제,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, R&D설비·에너지절약시설·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, 최저한세 등

아울러,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\*, 사회적기업,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하여는

\* 외형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·광업·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

- 납기연장\* 신청세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 하겠음.

\* (신청 경로) 국세청 홈택스>신청/제출>일반세무서류 신청>민원명 찾기>‘납부기한’ 입력>민원사무명 「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」>인터넷 신청 클릭

## 2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제출

■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 한까지 아래의 해외현지기업\*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.

\* 내국법인이 10%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

○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미(거짓)제출한 경우 각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.

..... <제출대상 자료> .....

- 해외직접투자의 명세
-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  
※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
-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  
※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
-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  
※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
-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

## 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

■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중 하나인 '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'을 흠택스\*를 통해 안내

\* (조회 경로) 국세청 흠택스 > 조회/발급 > 기타조회 > 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

\*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국세청(법인납세과)에 문의